

안경 · 콘택트렌즈 택배배송 허용 안내

- ☐ 11월부터는 안경업소에서 안경 · 콘택트렌즈를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.

【허용조건】

① 소비자가 직접 안경업소를 내방하여 ② 시력검사 및 조제 후(콘택트렌즈 판매의 경우에는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 등을 대면으로 안내받은 후) 결제가 이루어졌으나, ③ 재고부족, 주문제작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제품을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, 재방문할 필요 없이 택배로 제품 수령 가능

- ☐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세요!

Q1. 내방한 고객에게 e-카달로그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상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?

☞ 네. 가능합니다.

Q2. 금 번에 시행되는 택배배송의 경우, 안경 및 콘택트렌즈 범위에 제한은 없나요?

☞ 네. 상기 허용조건 3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, 시력보정용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합니다.

Q3. 과거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콘택트렌즈를 구매했던 고객이 전화(팩스, 이메일, 인터넷, SNS 등 포함)로 재주문하는 경우, 택배로 발송해도 되나요?

☞ 아니요.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(이하 "의료기사법")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는 "통신 판매"에 해당합니다.

Q4. 안경업소에서 주문 의뢰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도매·유통·제조업체 등이 안경업소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택배 배송할 수 있나요?

☞ 아니요. 주문을 한 안경업소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배송해야 합니다.

Q5. 고객이 인터넷 등에서 구매한 안경테를 택배로 안경업소에 보낸 후, 해당 안경업소가 안경을 조제·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?

☞ 아니요.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는 "통신판매"에 해당합니다.

Q6. 고객이 안과에서 받은 처방전 등을 안경업소에서 팩스(이메일, 전화, SNS, 인터넷, 우편 등 포함)로 받은 후 시력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택배로 배송할 수 있나요?

☞ 아니요. 의료기사법 제12조제5항에서 금지하는 "통신판매"에 해당합니다.

◆ 소비자의 안경업소 내방없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, 판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◆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